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562 |
|----------|-----|

제출연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저출산·인구감소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완화.
- 또한,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다자녀 가구 정책에 맞추어 시행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1호 개정
 - 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현행 자녀 3인 이상 가정에서 **자녀 2인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도모함** : 안 제3조 제11호
 - 1) **(기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2) **(개정)**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01. 27. ~ 2026. 0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6-175호, 산림과-1673(2026. 1. 27.)호

2) 규제심사 : 비규제[기획실-1659 (2026.01.23.)]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없음[기획실-1659 (2026.01.23.)]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 없음[가족복지과-4002 (2026.01.27.)]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3082(2026.02.19.)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3436(2026.2.25.)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 전단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u>3인 이상</u>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p> <p>12. (생략)</p> | <p>제3조(정의) -----</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p> <p>-----</p> <p>-- <u>2인 이상</u> -----</p> <p>-----.</p> <p>12.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기(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 16.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 주 하 |
| 연락처 | (033) 330 - 2450 |